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7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74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망 A의 소송수계인 B
피 고	[redacted]
변 론 종 결	2016. 3. 30.
판 결 선 고	2016. 5. 11.

주 문

1. 피고가 2014. 11. 10. 망 A에 대하여 한 취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체장애 1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이었고, C는 A의 며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7

리이다. A와 C는 2013. 9. 3. D 쏘울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A와 C는 2013. 9. 3. 당시 [redacted]시 [redacted]구 E, 301호(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에 동일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C는 A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는 그대로 둔 채 2013. 10. 7. 안산시 [redacted]구 F, 402호으로 전입하여 세대를 분가하였다가, 그 후 2013. 11. 11. 다시 이 사건 주소지로 전입하였다.

다. 피고는 C가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2015. 2. 10. A와 C에게 면제되었던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세 651,2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A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A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redacted]도지사는 2015. 1. 28. 이를 기각하였다.

마. A는 2015. 3.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진행 중이던 2015. 5. 15. 사망하였고, A의 아들인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A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권리의무를 단독으로 상속하게 됨에 따라 A의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7

1) 피고는 A에게 '취득세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는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8조 제2항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A에게 추징세액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2) C가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가하게 된 것은 새로 매입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한 형식적인 것이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A와 계속 동거하며 부양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세대를 분가함에 있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8조 제1항은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제2항의 규정은 종전에 지방세 감면대상자가 의무위반에 따른 추징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해 의무위반으로 감면된 세액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신설된 규정인바, 입법예고 당시 행정안전부는 그 개정이유에 관하여 '감면대상자에게 감면결정 통지시 감면결정사항 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7

외에 감면의무 이행사항도 함께 통보하여 감면의무 준수사항을 사전에 인지토록 함으로써 감면된 세액을 추징당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이라고 밝혔고, 함께 개정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1. 12. 31. 행정안전부령 제273호로 개정되고 2015. 12. 31. 행정자치부령 제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9조 제3호 별지 2호 서식(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에 "감면의무 위반시 추징 안내"란을 마련하여 의무준수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형식과 내용,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세 감면대상자에게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위 규정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감면대상자로부터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기 위해 준수하여야 할 절차상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따라서 설령 그 통지의 대상이 되는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이 법령에 규정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와 같은 서면통지 없이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가 A, C의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2013. 9. 3.자 취득세 감면신청에 관하여 감면결정 결과 및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 즉 'A나 C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을 A, C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C가 A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인 2013. 9. 3.부터 1년 이내인 2013. 10. 7.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A와 달리한 것이 구 지방세특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7

제한법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위와 같이 감면대상자인 A, C에게 서면으로 '감면에 따른 의무위반으로 인한 추징안내'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의무위반을 이유로 A, C가 감면받은 취득세액을 추징할 수는 없다.

3)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복규

판사 김선영

판사 홍영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7

별지

관 계 법 령

■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8조(감면신청 등)

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7

"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5. 12. 31. 행정자치부령 제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감면 신청)

③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1.12.31>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연도	기분	세목	과세번호	당 초 결정세액	감 면 결정세액	납부할 세액	납부기한

결정 사유		
감면의무 위반시 추징 안내	근거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조제○항
	의무 준수 사항	
	○ ※ 기재사항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끝.

행 정 기 관 의 장 직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7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 접수 처리과-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